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보통약관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7
제2조(용어의 정의)	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9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제5조(손해의 통지)	14
제6조(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	15
제7조(보험금 청구)	16
제8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16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절차)	16
제10조(보장의 결정 및 범위)	17
제11조(보장의 제외)	17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18
제13조(보험금 지급 또는 기타 보상 방법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	19
제14조(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등)	20
제15조(대위권)	2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21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21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21
제19조(청약의 철회)	22
제20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3
제21조(보험계약의 유지)	24
제22조(보험증권에 한정된 책임 및 전체계약)	25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2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	26
제2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2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해지)	26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7조(분쟁의 조정)	28
제28조(관할법원)	28
제29조(소멸시효)	28
제30조(약관의 해석)	29
제3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29
제3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9
제33조(개인정보보호)	29
제34조(준거법)	30
제3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0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상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 주요 민원사항

-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청약 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본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또는 권원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5.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6. 보험금의 지급 절차

손실 또는 손해가 이 약관에 의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부보된 사항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으로, 보험증권에 성명이 기재된 당사자 및 그 상속인,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 유족, 대리인 또는 법적 승계인을 비롯하여 법령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도(상속인, 수증자, 유족, 대리인, 법적 승계인 등) 회사가 기명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나 항변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 **보험금 청구인**: 손실 또는 손해를 청구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마. **보통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되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증권발행일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증권발행일자는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며, 보험증권 발행 이전에 회사의 승낙을 조건으로 권리보험 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권리보험 확인서 발행일이 증권발행일자가 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권리보험 관련 용어

가. **목적부동산**: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목적부동산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경계선 밖의 부동산 및 인접하는 거리, 도로, 수로에 대한 권리, 다른 소유권이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소유권**: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 **저당권**: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또는 기타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말하며,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소유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마. **정착물**: 법령상 부동산을 이루는 토지에 부속된 건물, 설치물 및 기타 정착물을 말합니다.

바. **알고 있는**: 약관에 정의된 공적기록 또는 목적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려주는 여타 등록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 **법령**: 법률, 명령(시행령), 규칙(시행규칙, 자치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말합니다.

아. **공적기록**: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기부, 건축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건축물대장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법에 의해 관리되는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말합니다.

자. **등록**: 등기부 및 대장에 등기 또는 등재되는 것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 **권리조사**: 공적기록을 대상으로 회사가 권리조사기준에 따라 권리관계와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 **권리보험 확인서**: 권리조사결과와 증권발행의 조건 및 보상의 예외사항들이 나타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발행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각 목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및

매도인의 신분에 관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를 위조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사기·강박으로 취득하거나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또는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 무능력(매도인 본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의사 및 행위무능력) 또는 무권대리(매도인의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2.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소유권이전 등기 보다 우선하는 권리(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부상 등록되는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등기공무원의 등기 오류 및 하자있는 행정 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또는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등기업무 과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② 회사는 보험증권상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제1항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가압류, 가처분, 인지세, 송달료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의미) 및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피보험자의 청약을 대리하는 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증권발행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증권발행일자 이후 목적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는 권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권리 등을 의미)
3. 정부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금지하는 법령(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령을 포함) 및 법률 위반에 따른 손실 및 손해
4. 법령에 따른 목적부동산의 수용, 환매, 몰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5.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목적부동산의 하자, 제한, 부담, 불리한 청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으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보험금 청구인이 설정, 부담, 인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동의하여 발생한 권리제한
 - 나. 보험금 청구인은 알고 있으나, 회사는 알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보장이 개시되는 일자 이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권리제한
 - 다. 보험금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권리제한
 - 라. 보험금 청구인이 목적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가액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권리제한
6. 파산, 회생,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의해 취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수권(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또는 용수에 대한 청구 및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8. 산림, 광물,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 등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나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9.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0. 전쟁, 폭동,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및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11.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 퇴직금청구권, 산업재해 보상청구권 및 각종 사회보험료 청구권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2. 대한민국 통일에 따른 소유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② 아래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약관의 부보 범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적기록상 증권발행일자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 및 부과금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2.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그 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245조](#)에 의한 취득시효 등의 사항, 기타 사실, 권리 및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登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登記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부담 및 기타 사항으로서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측량조사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불일치, 경계선의 상충, 면적의 부족, 부동산에 대한 침범 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상 이미 부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와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채권변제의 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차 부여, 부과될 용역, 노무 및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채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증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제1항에 기재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 받았으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③ 회사에 발송 및 제공되어야 할 모든 통지 및 서면은 이 보험증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회사의 보험금 청구 담당 부서를 참조인으로 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6조(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 ① 제5조(손해의 통지)에 따라 회사에 대한 통지를 한 후, 보험금 청구인은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 사실에 대해 확인 및 자신이 서명하고 확인한 당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보험금 청구인은 이 약관에서 부보하는 하자, 제한 또는 기타 사항들 중에서 손실 또는 손해의 근거가 되는 사항과 손실액 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금 청구인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증하는데 협력하지 않아 회사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약관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④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회사의 수임인(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의 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그 작성일이 증권발행일자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문서, 서류, 기록, 보험증권, 장부, 대장, 수표, 서신, 전자우편, 디스크, 테이프, 메모 또는 기타 제반 증빙자료를 회사의 수임인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 검토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위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수임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그 작성일이 증권발행일자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서 제3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제4항의 증빙자료를 조사,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⑥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기밀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가 보험금 청구 사건

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금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조사에 불응,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미제공 및 거부, 제3자로부터의 정보 획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회사 양식)
2. 법원판결문, 경매 배당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 자료
3. 신분증
4. 계좌사본
5.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6. 기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8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및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절차) ① 회사는 손실 또는 손해의 책임 및 범위가 이 약관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금 청구인 또는 계약자가 제7조(보험금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

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보장의 결정 및 범위) 회사는 이 약관에 부보된 사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하며, 그 보상범위는 이 약관에 기재된 바에 한정됩니다.

1. 보험증권상 회사의 책임은 아래 가목 내지 나목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나. 보험증권상의 목적부동산 또는 권리의 가액과 이 약관에 의해 부보된 하자, 부담, 권리 및 담보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목적부동산 또는 권리의 가액간의 차액.

2. 회사는 이 약관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에 따라 발생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장의 제외)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소유권이 확실하게 취득되도록 하는 경우

2. 주장된 하자, 제한, 부담, 권리 또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②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제기된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소송 또는 기타 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부보된 소유권에 불리하거나 관할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형사고소·고발인 경우 처분결과가 사기로 확정되어야 함)이 내려지고 그에 관련한 모든 불복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청구 또는 소송의 해결을 위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인수한 채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제13조(보험금 지급 또는 기타 보상 방법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3자가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제기하는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 또는 기타 불리한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방어해 드립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되, 회사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의 부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수수료, 비용, 경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또한 회사가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수료, 비용 및 경비에 대하여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소유권의 권리를 입증하거나 손실 및 손해를 방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소송 제기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는 이 약관상 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약관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 약관상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합니다.

④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형사고소·고발인 경우 처분결과가 사기로 확정되어야 함)

을 받을 때까지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불리한 유권해석, 판결, 법령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불복할 권리를 갖습니다.

⑤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소송 제기, 방어 및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보장하며 회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의 명의사용을 허용합니다.

⑥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1.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증거, 증인의 확보, 소송 제기 및 방어,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협력

2. 회사가 이 보험증권상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리적인 협력

⑦ 피보험자가 제6항에 불구하고 그러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 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 또는 기타 보상 방법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 ①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아래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소멸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제공과 함께 회사가 승인한 제반 비용을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제공 시까지 부담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

2. 피보험자를 제외한 당사자 또는 보험금 청구인에 대한 지급 또는 그들과의 기타 보상에 대한 합의

가. 보험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또는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로 이 보험증권상 보상되는 청구금과 회사의 지급 시까지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나. 이 약관에 규정된 손실이나 손해를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지급 시까지 부담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비용과 함께 보험금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지급의무를 제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소송이나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진행할 의무를 비롯하여 청구 받은 손실이나 손해에 관한 이 보험증권의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종료합니다.

제14조(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등)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이 보험증권에 의해 지급된 모든 지급액만큼 이 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감액됩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 청구인과 합의하거나 이를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금 청구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권리는 보험금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금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인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로 소송, 화해 또는 합의하고, 이러한 권리 또는 구제 수단과 관련된 모든 거래,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약정, 보증이나 다른 보험증권상의 권리가 포함되며, 다른 보험증권 기타 관련 문서가 회사의 대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권리보험 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의19(정의)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함)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약서에 명시된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계약철회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기로 합니다.

제20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전자우편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용 정지된 주소를 알리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

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계약의 유지) ①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기타 이전(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을 의미)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 및 이 보험증권의 부보 범위는 이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증권발행일자 현재 피보험자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1.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매수인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거나 매매대금에 관한 저당권부 채권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2조(보험증권에 한정된 책임 및 전체계약) ① 보험증권과 회사가 첨부한 모든 배서조항 및 특약은 피보험자와 회사간의 전체 보험증권 및 계약을 구성하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는 이 약관상의 내용으로 대체되며 더 이상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보험증권은 전체로서 해석됩니다.

② 이 약관 규정의 모든 변경, 개정 또는 수정은 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배서조항 및 특약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지점장 기타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③ 보험증권에 수시로 첨부되는 각 배서조항 및 특약은 보험증권의 일부가 되며, 이 보험증권상의 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배서조항 및 특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서조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 또는 모든 배서조항 및 특약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2. 증권발행일자 또는 모든 배서조항 및 특약의 개시일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3.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④ 귀책사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손실 및 손해의 청구는 이 약관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⑤ 이 약관의 어느 규정이 관계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불능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 약관은 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다른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계약상의 수익자이므로 보험계약자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① 회사는 증권발행일부터 피보험소유권이 매매 또는 양도될 때까지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보험계약의 유지)의 사유는 증권발행일자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위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적합성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7조(분쟁의 조정) 이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금융감독원내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3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